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나37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나372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522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피고, 피항소인유한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유한회사 B의 공동관리인 F, G의 소송수계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규

변론 종결2022. 7. 6.

판결 선고2022. 8. 31.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5223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C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7.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160,51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0,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8.1) 체결한 매매계약을 214,01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4,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가액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가 이 사건 토석에 관하여 2017.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5,35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5,350만 원의 미지금 임금과 160,510,000원의 대여금 등 합계 214,01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2017. 10.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석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바, 원고는 위 채권액 214,010,0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인 214,0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C를 상대로 5,350만 원의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243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0나3713), 이후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0. 12. 31.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또한 원고는 C를 상대로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C에 대여하거나 C의 요청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한 데 따른 대여금 내지 구상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 합계 160,51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2443),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9.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C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석을 포함한 토석 합계 약 85,000㎡를 5억 2,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토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9. 18. 광주지방법원 2020회합501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2.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22. 1. 26.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 1)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원고는 C에 대하여 5,350만 원의 미지급임금 및 160,510,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채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미지급 임금 및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종래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였고, 그 중 대여금 등 채권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선행 확정판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아울러 피고도 위 대여금 등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0. 18.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합계 160,510,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²⁾.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등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관련 선행 판결의 선고 및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대여금 등 채권 자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특히 대여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대여계약)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대여금 등 채권이 실제 성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의 자력 상황 가) 소극재산 내역과 가액3) 갑 제1, 15 내지 20, 22 내지 24, 25 내지 27,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0. 18. 기준 C의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채무 160,510,000원

② H에 대한 채무 4억 1,500만 원[갑 제1호증. 원고는 C의 H에 대한 채무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6호증 및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2016. 8. 29. C 소유 부동산(아래 적극재산 내역과 가액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가 H에게 실제 부담하는 채무가 4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I에 대한 채무 1억 1,000만 원(갑 제17호증)

④ J에 대한 채무 1억 원(갑 제18호증)

⑤ 유한회사 K에 대한 채무 196,926,500원(갑 제20호증)

⑥ 유한회사 L에 대한 채무 777,490,850원[2016. 8. 8.부터 2017. 12. 31.까지의 거래대금 채무 합계 974,507,350원(273,549,600원 + 700,957,750원)에서, 위 거래대금 채권에 관하여 유한회사 L의 채권자 유한회사 K의 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47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 8. 24. C에 송달)에 따라 부담하는 위 ⑤의 추심금 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77,580,850원(974,507,350원 - 196,926,5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갑 제19, 20, 22, 23호증]

⑦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321,232,876원[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M이 2016. 8. 18. 주식회사 N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33.6%로 대여하고 C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2017. 10. 18.까지 426일간 위 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령에 따른 최고이율 2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322,945,205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한편, 주식회사 M이 C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 채권의 변제를 청구한 대전고등법원 2018나10560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갑 제30호증) 중 당사자가 양보하여 정한 채권·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8. 7. 7. 비로소 창설적 효력이 생기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소극재산 내역과 가액에 관한 이 부분 판단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4대보험료 체납액 31,186,130원(갑 제24호증)

⑨ 근로소득세 체납액 5,748,000원(갑 제26호증)

⑩ 지방세 체납액 6,798,860원(갑 제27호증)

⑪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 24억 원(갑 제31호증)

⑫ 합계 4,524,893,216원

나) 적극재산 내역과 가액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는 2017. 10. 18. 당시 '이 사건 토석을 포함한 토석 약 85,000㎡' 외에 '군산시 P 잡종지 9,940.4㎡ 및 위 지상 2층 공장 건물, Q 잡종지 1,824㎡'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7. 12. 18. 기준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985,326,22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0. 18.경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역시 2017. 12. 18. 당시 시가와 같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8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석 등 토석 약 85,000㎡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위 토석의 가액이 피고와 C가 정한 매매대금 5억 2,3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4,524,893,216원)이 적극재산(4,508,326,220원 = 3,985,326,220원 + 5억 2,300만 원)을 초과하고, 설령 위 토석의 가액이 539,566,996원(소극재산의 가액 4,524,893,216원 - 위 각 부동산의 시가 3,985,326,220원)을 초과한다고 보더라도 C가 피고에게 위 토석을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소극재산의 가액(4,524,893,216원)이 적극재산의 가액(3,985,326,220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토석 약 85,000㎡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석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2017년도 제2기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의 자산총계(4,322,536,008원)가 부채총계(3,901,941,550원)를 초과하여 위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 수 없었을뿐더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이상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2022. 4. 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2020. 4. 13.자 참고서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토석을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원물을 반환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60,51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7. 10. 18.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60,51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의 각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신태광

별지

1) 원고는 '2017. 10.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키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항소취지의 경우에도 같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위 대법원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0.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대여금 등 채권의 각 원금만을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다.

3) 원고가 2022. 5. 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소극재산 항목에 한하여 이를 살피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아래 각 채무(⑦ 제외)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